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60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안상훈·김 건·윤영석
이만희·김종양·배준영
박성훈·박덕흠·안철수
한지아·박형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3(검역의 날) ① 검역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검역의 날로 한다.
- ② 국가는 검역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의3(검역의 날) ① 검역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검역의 날로 한다.</u></p> <p><u>② 국가는 검역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